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연월일	2017. 9. .
발 의 자	김정곤의원 외 9명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정곤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	--

발의연월일 : 2017. 9. .

발 의 자 : 김정곤 · 권기만 · 김근아 · 김상조 · 김인배
박교상 · 안장환 · 양진오 · 윤종호 · 정근수
의원(10명)

1. 제안이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구미시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고, 지역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구미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나.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화학물질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화학사고 고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 화학물질 안전관리교육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 제10조)

3. 조 례 안 : 붙임

4. 참 고 사 항

가.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붙임)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으로부터 구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시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구미시의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정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의 관리 현황과 향후 전망
3.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비상대응계획
4.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5.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미시 환경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구성된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유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 중 구미시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42조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지역사회에 고지하는 사업장의 위해관리계획서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5조(화학물질 현황조사)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물·토양·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다.

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
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안전과 환경 보전에 위해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② 시장은 정보공개, 안전관리계획 및 비상대응계획 수립 등을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화학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① 시장은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화학사고 대응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및 사업장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현황 및 사고대응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이하 “비상계획”이라 한다)을 구미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비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및 시기
2.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정보전달 방법 및 시민 행동요령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5. 화학사고 시 시민의 대피방법, 대피장소 및 사고지역으로의 출입통제방법
6. 화학사고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이 정한 사항

③ 시장은 비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화학사고 고지) 시장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시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발생 시간 및 장소
2. 사고 물질 및 독성정보
3. 대피 및 행동 요령 등

제9조(교육·훈련 등)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

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자 등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고대비물질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 ⑥ 생략

제42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취급 사업장 인근 지역주민에게 제41조제1항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의 내용 중에서도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알기 쉽게 매년 1회 이상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고지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
2. 화학사고 발생 시 대기·수질·지하수·토양·자연환경 등의 영향 범위
3. 화학사고 발생 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주민에의 고지는 서면통지, 개별설명, 집합전달 등의 방법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고지 이외에도 지역

주민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내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위해관리계획서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 ① 생략

②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즉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지방환경관서, 국가경찰관서, 소방관서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구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발생(안 제3조)
- 화학사고 대응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7조)
- 화학사고 대비 교육 및 합동훈련 실시에 따른 세출 발생(안 제9조)
-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재정지원에 따른 세입·세출 발생(안 제10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의안 발의전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에 대한 세입·세출을 기초로 하며, 향후 안전관리계획 수립·시행 등에 따라 추가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추계하지 아니한다.
- 2017년도 본예산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편성된 비용을 기초로 세입은 재원별, 세출은 통계목별로 산정한다.
- 추계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으로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세입	○ 도비보조금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소계(a)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세출	○ 화학물질 안전관리	131,645	131,645	131,645	131,645	131,645	658,225
	소계(b)	131,645	131,645	131,645	131,645	131,645	658,225
□ 총 비용(a-b)		-91,645	-91,645	-91,645	-91,645	-91,645	-458,22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천 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200,000
시 비	91,645	91,645	91,645	91,645	91,645	458,225
민 간						
기 타						
합 계	131,645	131,645	131,645	131,645	131,645	658,225

5. 부대의견 : 세입(도비보조금) 및 세출(화학물질 안전관리) 예산은
추정비로서, 여건에 따라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6. 작성자

작성자 이름	환경안전과 박유리
연락처	054-480-5262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세입

- 도비보조금 추정

(단위: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도비보조금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소 계	40,000	40,000	40,000	40,000	40,000

※ 2017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된 금액을 기초로 재원별 산정(2017년도 예산서 참고)

2. 세출

- 화학물질 안전관리 예산액 산정

(단위:천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일 반 수 용 비	13,000	13,000	13,000	13,000	13,000	65,000
행 사 운 영 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
재 료 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전 산 개 발 비	13,525	13,525	13,525	13,525	13,525	67,625
행사실비보상금	3,120	3,120	3,120	3,120	3,120	15,600
민간대행사업비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400,000
계	131,645	131,645	131,645	131,645	131,645	658,225

※ 2017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된 비용을 기초로 통계목별 산정(2017년도 예산서 참고)